

「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」 일부개정훈령안

1. 개정이유

표준시장단가(공사비산출방식) 중 재료비·경비에 대하여 건설부문에 대표성 있는 물가지수를 적용하도록 물가보정방법을 변경함으로써 현장 물가를 단가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 및 실질에 맞지 않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련 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, 문맥상 의미 등을 수정함(안 제2조제7항, 제3조)
- 나. 표준시장단가 중 재료비·경비에 대하여 물가를 보정할 경우 기존 생산자물가지수에서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도록 개정(안 제90조제3항)
- 다.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(건설기술용역→건설엔지니어링 등),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(건설업자→건설사업자)을 반영하기 위함(안 제11조, 제23조제3항, 제27조제4항, 제38조, 제102조, 제146조제1항, 제149조제15항, 별표21, 별지제40호 서식)
- 라. 행정처분 방법과 관련하여 실질에 맞지 않는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49조제9항·제1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항 중 “제7편은”을 “제7편은 법 제82조 및 영 제115조, 제117조에 따른 위임·위탁기관이”로 한다.

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책임기술인”이란 계약자를 대리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11조제11호 및 제23조제3항제2호 라목 중 “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”를 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”로 하고 마목 중 “용역수행”을 “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4항제3호 중 “용역”을 “건설엔지니어링사업”으로 한다.

제38조 중 “제공하여야 하며”를 “제공하여야 하며”로 하고, “용역”을 “건설엔지니어링사업”으로 한다.

제90조제3항제1호 중 “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”를 “건설공사비 지수”로 하고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서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, 노무비와 재료비 및 경비에 포함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.

제102조제4호 마목 중 “건설기술용역 업무”를 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”로 한다.

제115조제3항 중 “건설사업관리용역”을 “건설사업관리”로 한다.

제146조제1항제1호 마목 중 “건설기술용역업자”를 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”로 하고, 사목 및 제2호 중 “건설업자”를 “건설사업자”로 한다.

제149조제9항 중 “제148조제3항”에서 “제148조제4항”으로 하고, 제1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⑫ 처분권자는 처분내용이 확정될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위법사실과 과태료 부과 등을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
제149조제15항 중 “건설기술용역업자”를 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”로 한다.

제152조 중 “1월 1일”을 “7월 1일”로 하고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[별표 21] 및 [별지 제40호 서식] 중 “건설업자”를 “건설사업자”로 하고, 건설기술용역업자”를 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”로 한다.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적용대상 및 범위) ① ~ ⑥ (생략) ⑦ 제7편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,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.	제2조(적용대상 및 범위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제7편은 법 제82조 및 영 제115조, 제117조에 따른 위임·위탁기관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,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.
제3조(정의) 3. “책임기술인”라 함은 <u>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</u>	제3조(정의) 3. “책임기술인”이란 <u>계약자를 대리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</u>
제11조(심의내용)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“중앙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 1. ~ 10. (생략) 11. 영 제6조제7호에 따라 <u>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</u>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·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적성에 관한 사항	제11조(심의내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----- <u>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</u> ----- ----- -----
제23조(기술자문위원회 운영) ① · ② (생략)	제23조(기술자문위원회 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(생략)

2. 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가. ~ 다. (생략)

라.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·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
마.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

제27조(설명회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,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3.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, 연구, 자문 등을 의뢰하는

③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-----

마. -----
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-----

제27조(설명회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건설엔지니어링사업-----

행위 제38조(사전조사실시) 발주청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<u>제공하여야하며</u>, 이 경우 발주청에서는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<u>용역</u> 등을 실시할 수 있다.	--- 제38조(사전조사실시) ----- ----- ----- --- <u>제공하여야 하며</u>----- ----- - <u>건설엔지니어링사업</u> -----.
제90조(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) ①·② (생략)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개정 대상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 이전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할 수 있으며, 물가보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, 노무비는 ‘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’, 재료비 및 경비는 ‘<u>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</u>’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. 2. 공종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서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, <u>제89조에 따른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</u> 물가 보정한다.	제90조(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1.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, 노무비는 ‘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’, 재료비 및 경비는 ‘<u>건설공사비 지수</u>’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. 2.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서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, <u>노무비와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</u>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.
제102조(정의) 제6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4. “점검”이라 함은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, 공장 등을 방문하여	제102조(정의)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

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말한다.

가. ~ 라. (생략)

마. 법 제38조에 따른 건설기술
용역업무 수행사항 검사

제115조(조사결과의 처리) ①·②
(생략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검수단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중간평가에 반영하고,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46조(처분권자 및 업무) ① 법 제82조제1항 및 영 제115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국토관리청장

가. ~ 라. (생략)

마.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

바. (생략)

사.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. 다만, 「건설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-----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---

제115조(조사결과의 처리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건설사업관리

제146조(처분권자 및 업무) ① ---

1. -----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-----
-----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-----

바. (현행과 같음)

사.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. 다만, 「건설

산업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제외

2. 시·도지사

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 제91조의 과태료 부과·징수

제149조(행정처분의 방법,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) ① ~ ⑧ (생략)

⑨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48조제3항에 의한 처분대상자의 처분내용을 확정 한 후 다른 처분권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송시켜야 한다.

⑩ · ⑪ (생략)

⑫ 처분권자는 제11항에 따라 결정된 위법사실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
⑬ · ⑭ (생략)

⑮ 시·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 제6호부터 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을 할 때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[영 제46조제1항 별표 6 및 제121조제1항 별표11

산업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제외

2. 시·도지사

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 제91조의 과태료 부과·징수

제149조(행정처분의 방법,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

⑨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48조제4항에 의한 처분대상자의 처분내용을 확정 한 후 다른 처분권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송시켜야 한다.

⑩ · ⑪ (현행과 같음)

⑫ 처분권자는 처분내용이 확정될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위법사실과 과태료 부과 등을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
⑬ · ⑭ (현행과 같음)

⑮ 시·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 제6호부터 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처분을 할 때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[영 제46조제1항 별표 6 및 제121조제1항 별표1

(시·도지사의 권한에 한한다)]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.	1(시·도지사의 권한에 한한다)]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.										
제152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<u>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</u>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52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<u>7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6월 30일</u>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									
[별표 21]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. 이의신청권자 및 제출기관 1) 이의신청권자 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, <u>건설업자</u> , <u>건설기술용역업자</u> 및 그 대리인	[별표 21]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. 이의신청권자 및 제출기관 1) 이의신청권자 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, <u>건설사업자</u> , <u>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</u> 및 그 대리인										
[별지 제40호 서식]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인 제재처분 현황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<td rowspan="4">(생략)</td></tr> <tr> <td>건설기술인</td></tr> <tr> <td><u>건설기술용역업자</u></td></tr> <tr> <td><u>건설업체</u></td></tr> </table>	구분	(생략)	건설기술인	<u>건설기술용역업자</u>	<u>건설업체</u>	[별지 제40호 서식]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인 제재처분 현황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<td rowspan="4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>건설기술인</td></tr> <tr> <td><u>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</u></td></tr> <tr> <td><u>건설사업자</u></td></tr> </table>	구분	(현행과 같음)	건설기술인	<u>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</u>	<u>건설사업자</u>
구분	(생략)										
건설기술인											
<u>건설기술용역업자</u>											
<u>건설업체</u>											
구분	(현행과 같음)										
건설기술인											
<u>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</u>											
<u>건설사업자</u>											